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267

발의연월일: 2025. 1. 6.

발 의 자: 안호영·정을호·박희승

박홍배ㆍ이학영ㆍ이원택

박 정・김주영・어기구

주철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, 재해예방 관련 교육의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,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를 감면하고 있음.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,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, 재해예방활동 인정 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된보험료를 환수하지 않고 있음.

이에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

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이와 더불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청년창업 자에게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창업자의 사업초기 비용부담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청년창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 조제9항,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신설).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9항 중 "제8항제1호"를 "제8항제1호 및 제2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8항제2호 및 제3호"를 "제8항제3호"로 한다.

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
② 국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 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,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제21조의2(산재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

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3(종전의 제21조의2)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료"를 "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산재예방요율 적용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 중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① ~	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① ~
⑧ (생 략)	⑧ (현행과 같음)
⑨ <u>제8항제1호</u> 에 따라 재해예	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
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	
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	
용을 취소하고, 산재예방요율을	
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	
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	
여야 한다.	<u>.</u>
⑩ 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	⑩ <u>제8항제3호</u>
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	
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	
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	
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	
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	
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.	
① · 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고용보험료의 지원) ①	제21조(고용보험료의 지원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국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
	원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
	기창업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1
	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에 해

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<신 설>

 제21조의2(지원금의 환수)
 ① 국 전

 가는 제21조에 따른 고용보험
 료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

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
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

<u>당하</u>	는 자가	제13조제4	항에	따
라 투	부담하는	고용보험	료의	일
<u>부를</u>	예산의	범위에서	지원	할
<u>수 있</u>	<u>.다.</u>			

<u>3</u>	제1항	및	제2항-	

제21조의2(산재보험료의 지원) ① 국가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 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 창업기업으로서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청년창업기업에 해당하는 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 수준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212	<u>조의3</u> (지원금	의 환수	=) ① -	
	·- <u>제21</u> 조 및	제21조	:의2에	따
라	고용보험료	또는	산재보	<u>.</u> 험
맆-				

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 다만, 환수할 금액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.

1. • 2. (생략)

② ~ ④ (생 략)

· 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